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비밀정보**란 비밀로서 제공되고 그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그 공개가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우위가 되거나 그 공개가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인에게 중대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나. **관세**란 제2.1조(정의)나호에 정의된 관세를 말한다.
- 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 라. **원산지 상품**이란 제3.1조(정의)타호에 정의된 원산지 상품을 말한다.
- 마.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8조(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제1항에 기술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 바.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사.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아.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2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기술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기간이란 특정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당사자의 관세 양허표에 따른 그 상품의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완료일 후 8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2조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집단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어떠한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수입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을 인상하는 것

1)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당사자들은 관세율할당이나 수량제한 중 어느 것도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허용 가능한 형태가 아님을 양해한다.

3. 어떠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품위원회는 과도적 긴급수입제한기간 종료 전 3년 내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을 포함한 이행 및 운영을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제7.3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자는 다음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들에 즉시 서면통보를 전달한다.

가.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와 관련하여 제7.4조(조사 절차)에 언급된 조사의 개시 및 그 사유

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조사 결과

다.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적용 또는 연장, 그리고

라. 점진적인 자유화를 포함하여,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수정 결정

2.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당사자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와 국가상품분류체계상 호와 소호를 포함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술

나. 조사 개시 사유에 대한 요약, 그리고

다. 조사 개시일과 조사 기간

3. 한쪽 당사자는 제7.4조(조사 절차)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의 보고서 공개본의 사본 또는 인터넷 주소를 다른 쪽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제공되는 보고서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보고서에 원래 사용된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4. 제1항번호부터 라호까지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당사자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와 국가상품분류체계상 호와 소호를 포함하여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술

나. 이 협정상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에 의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증거

다. 제안된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라.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제안된 도입일자, 예상 존속기간,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제7.5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범위 및 존속기간) 제3항에 언급된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위한 일정표, 그리고

마.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관련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5.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을 제안하는 당사자는 특히 제7.4조(조사 절차)에 언급된 조사로부터 발생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검토,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

그리고 제7.7조(보상)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의 수출자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7.4조 조사 절차

1.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은 필요한 변경을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에 언급된 조사를 그 조사의 개시일 후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제7.5조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범위 및 존속기간

1.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한 경우
 - 나. 잠정 및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된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

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 조에도 불구하고,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는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추가적으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다.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기간의 만료 후

2.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이 협정상 약속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첫 번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발효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 그 원산지 상품의 수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3.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적용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4. 당사자가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원산지 상품의 관세율은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그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5.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특정 원산지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이전의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존속기간과 동일한 기간 또는 그러한 조치의 만료 후 1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 하지 않는다.

제7.6조

최소허용수준 수입 및 특별 대우

1. 잠정 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당사자의 수입 당사자 내 관련 상품의 수입 비중이 모든 당사자들로부터의 그 상품의 총수입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수입 비중이 3퍼센트 미만인 그러한 당사자들의 합이 전체의 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잠정 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빈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보상

1.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또는 연장을 제안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수출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상호 합의된 적절한 무역 보상 수단을 그러한 수출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그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될 수출 당사자들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일부터 30일 내에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협의가 그러한 협의의 개시부터 30일 내에 무역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상품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당사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그 당사자의 상품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자신의 상품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기 최소 30일 전에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에 서면 통지를 전달한다.

4.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권리는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종료 시 소멸된다.

5.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그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따라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권리는 그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3년간 행사되지 않는다.

6.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최빈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그 조치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어떠한 보상도 요청받지 않는다.

제7.8조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1.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수입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증가했으며 그러한 수입 증가가 그 수입 당사자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야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그 수입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제7.2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규정된 조치의 형태를 취하는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다른 당사자들에 서면 통지를 전달한다.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관련된 상품의 수출자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과의 협의는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된 후 즉시 개시된다.

3. 모든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제7.4조(조사 절차)제1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제7.4조(조사 절차)제1항에 언급된 조사에서 제7.2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는 그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모든 추가 관세를 신속하게 반환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5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

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범위 및 존속기간) 제1항나호에 규정된 총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4. 제7.2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제2항, 제7.5조(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범위 및 존속기간) 제4항 및 제7.10조(그 밖의 규정) 제1항 및 제2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적용된다.

제7.9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

2. 제3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들에 어떠한 권리 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²

3.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자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통지 또는 인터넷 주소를 즉시 제공한다. 당사자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따라 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어떠한 당사자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잠정 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제20.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제20.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른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제7.10조

그 밖의 규정

1. 각 당사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법과 규정의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과도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제7.3조(통보 및 협의)제1항, 제7.7조(보상)제3항 및 제7.8조(잠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제2항에 언급된 서면 통지는 영어로 작성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7.11조

일반 규정

1. 당사자들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절은 그러한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한다.
2.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응답자³에 의하여 제공되고 반덤핑 관세 마진 또는 상계 보조금 수준의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의 수행을 결정하는 모든 절차에서,

³ 이 항의 목적상, “응답자”란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질의서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생산자, 제조업자,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조사 당국은 그들의 의사를 응답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리고

가. 조사 당국은 그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려는 날 최소 7일 전에 응답자에게 사전통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나. 조사 당국은 그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러한 현장조사의 최소 7일 전에, 응답자가 검증 과정에서 다루도록 준비되어야 할 주제를 규정한 문서 및 응답자가 검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증명서류의 유형을 기술한 문서를 응답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의 이행은 조사의 수행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3. 당사자의 조사 당국은 각 조사 및 검토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비밀이 아닌 파일을 유지한다.

가. 조사 또는 검토 기록의 일부인 모든 비밀이 아닌 문서, 그리고

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가능한 한도에서, 각 조사 또는 검토 기록에 포함된 비밀정보의 비밀이 아닌 요약본

4. 조사 또는 검토 중에, 당사자의 조사 당국은 조사 또는 검토에 대한 비밀이 아닌 파일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이해당사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조사 당국의 정상 업무시간 동안 조사 및 복사가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는

나.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7.12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당사자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

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할 때, 그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최소 7일 전에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그 다른 당사자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할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한쪽 당사자는 상계 관세 조사 개시일 최소 20일 전에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그 다른 당사자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그 다른 당사자를 초청하도록 노력한다. 관련 당사자들은 그 기간 내에 협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3. 제2항에 언급된 협의를 고려하여, 제2항에 언급된 조사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조사 개시 전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공개본을 그 다른 쪽 당사자에 제공한다. 조사를 개시하려는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절차적 규칙에 합치되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13조

제로잉의 금지

반덤핑 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프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및 개별거래 가격비교로 계산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가중평균과 개별거래 간 가격비교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두 번째 문장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거나 그러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14조

필수적 사실의 공개

각 당사자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최종판정 최소 10일 전에 가능한 한도에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모든 필수적 사실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당사자의 조사 당국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 또는 조사 당국에 의하여 수립된 기한 내 의견이 접수된 경우, 최종판정에서 그러한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7.15조 비밀정보의 취급

당사자의 조사 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언급된 대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정보의 비밀이 아닌 요약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반덤핑 협정 제6.2조에 합치되게,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언급된 비밀이 아닌 요약본은 그 조사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응답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방어할 기회를 허용하기 위하여 비밀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제7.1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자도 이 절 또는 부속서 7-가(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절에 대한 분쟁해결의 적용 가능성은 제20.8조(일반 검토)에 따라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